♡NH투자증권



mww.nhqv.com

연금자산관리센터 1544-6060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교재





풍요로운 노후준비를 위한 Smart Choice



NH투자증권 퇴직연금에 가입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의 행복한 노후에 NH투자증권이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가입자교육이란?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제도 일반, 부담금 납입 현황, 적립금 운용방법 등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형IRP와 기업형IRP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실시)

가입자교육의 중요성

가입자의 제도 이해와 금융지식 수준은 본인 퇴직 연금 마련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DC, IRP의 경우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노후소득이 변동되므로, 가입자교육이 더욱 중요합니다.

가입자교육 방법

알림톡, 전자문서, 이메일, 우편, 사내게시, 온라인 (홈페이지/모바일앱), 집합교육(사업장방문)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사용자의 책무)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⑤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

CONTENTS

연금백세. 하나	퇴직연금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0
	I . 퇴직연금제도 이해하기	0
 연금백세. 둘	 퇴직연금 300조 시대, 투자의 문이 열린다	1
	II. 확정급여형(DB) 추가 교육사항	1
	Ⅲ.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추가 교육사항	2
	IV. 디폴트옵션 알아보기	2
	∨. 퇴직연금 과세체계 이해하기	2
TIP	트로 보고	2
 연금백세. 셋		2
	VI. 적립금 운용 이해하기	3
	Ⅶ. 자산,부채 관리 일반원칙과 노후설계의 중요성	3
	Ⅷ. 퇴직연금 온라인 이용하기	3

연금 백세

퇴직연금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

요즘 미국 은퇴자들 사이에서 '401K 밀리어네어(Millionaire, 백만장자)'란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401K는 우리나라의 IRP(개인형퇴직연금)와 비슷한 미국의 퇴직연금계좌로 401K에 저축을 하면 소득 공제도 받고 대부분의 회사가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에 맞추어 추가저축(Matching Contribution)을 해주기도 합니다. '401K 밀리어네어'는 401K에 꾸준히 적립하고 투자하여 100만달러(약 13억원, 원달러 환율 1.300원 기준) 이상의 퇴직연금을 가지고 풍족하게 은퇴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도 미국처럼 퇴직연금을 통해 은퇴 후 연금부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매년 1,200만원씩 적립하고 연 수익률 7% 운용을 가정하면 30년 동안 11억원이 넘는 자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IRP(개인형퇴직연금)를 함께 활용하고, 장기간 꾸준한 납입과 실적배당형 상품을 통해 투자수익률을 확보하는 등 몇 가지 추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연금자산 10억 만들기, 가능할까?

퇴직연금이 근로자들의 은퇴생활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살펴보면 만55세 이상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 중에서 대부분 일시금(95.7%)을 선택하였고,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4.3%에 불과합니다. 퇴직연금이 은퇴 후 생활에 현금흐름을 제공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약 9.3조원 중 34.3%(3조 2,028억원)를 연금으로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연금 수령계좌의 평균 적립금은 약 1.9억원으로 일시금 수령계좌 평균 적립금(약 1천 6백만원)의 12배에 이릅니다. 소액일수록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모습인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을 만큼 퇴직연금 적립금을 충분히 쌓지 못함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여부를 근로자들의 잘못된 선택 문제로 치부하기 보다는 퇴직연금의 연속성을 이어가며 연금으로 받고 싶을 만큼 충분한 적립금을 쌓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언급했던 것처럼 매년 1,200만원(월 100만원)을 꾸준하게 적립 투자하면 10억원이 넘는 연금자산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론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준비하고 있는 국민연금 등을 감안하면 좀 더 가까운 현실이 됩니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예상연금은 평균월 98만원 정도 됩니다. 이를 25년간 수령한다고 가정했을 때 3억원 정도의 자산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10억원을 기준으로 7억원이 남게 되는데, 이는 연 수익률 7% 기준으로 매년 740만원을 30년간 적립하면 만들 수 있는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2022년 월 470만원)수준이라면 매년 470만원 이상 퇴직연금이 적립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270만원 정도를 IRP(개인형퇴직연금)에 매년 추가 적립하면 됩니다. 평균적인 가구의 근로소득 수준만 되어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연금자산 10억원을 만드는 것이절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2023년 부터는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연 900만원(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한층 효율적인 연금자산관리가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도 11억원 정도의 연금자산을 만들 수 있으니, 국민연금까지 더한다면 우리나라 근로자 가구도 연금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무원연금을 받는 공무원이나 사학연금을 받는 선생님들을 부러워합니다. 은퇴 이후에 도 적지 않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나 선생님들이 안정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많은 금액을 충분히 오래 적립해온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부러워만 하지 말고 공무원이나 선생님 같은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를 더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평균적인 근로자들이라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 잘 활용하면 안정된 노후생활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금저축까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지요. 긴 호흡으로 차근차근 노후준비를 하다 보면연금부자로 은퇴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습니다.





Ⅰ · 퇴직연금제도 이해하기

퇴직연금제도란?

-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사용자)가 근로자(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 금융기관(DB/DC 퇴직연금사업자) 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 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생활에 쓸 수 있으며 재직중 회사가 도산·파산하여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금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의 구성



기존 퇴직금제도의 한계

수급권 취약

- 장부상 충당금을 계산할 뿐, 실제 퇴직금 지급을 위한 연금 자산이 별도로 없음
- 체불사업장 및 체불액 증가
- 파산시 수급권 확보 어려움

노후자금 취약

- 중간정산의 일상화
- 생활비, 자녀 결혼 등 퇴직금 소진→ 노후자금 부족
- 추가 적립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 부족

변화에 취약

- 장기근속 중심 고용형태 및 연공 서열식 임금체계에 기초한 퇴직금 산정
- 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변화된 임금 체계와 부조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DB, Defined Benefit

-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확정되는 제도입니다.
-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여 운용하며, 근로자는 퇴직 시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 여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 적립금의 운용 성과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DC. Defined Contribution

- '매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입니다.
- 매년 근로자의 개별 계정에 사용자가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책임지고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자신의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 연간 1,800만원까지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하며, 추가 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연금저 축계좌, IRP)와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 한도로 최대 16.5%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p.26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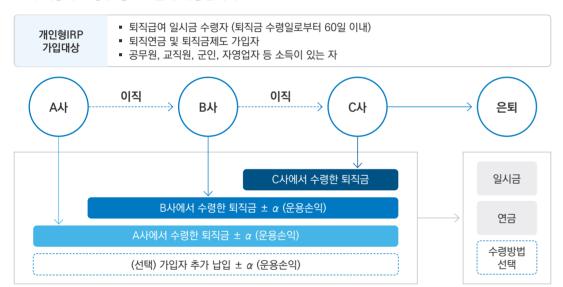


혼합형제도

■ 사용자가 한 근로자에 대하여 DB·DC제도를 함께 설정하는 퇴직연금제도로 각 제도의 설정비율의 합은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이직 또는 조기 퇴직 시 개인이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 시점까지 보관, 통산,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상관 없이 퇴직 시 퇴직급여를 개인형IRP로 수령(의무이전)해야 합니다.
- 가입자 본인의 부담으로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추가 납입한 금액은 연금저축계좌 와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을 한도로 최대 16.5%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개인형IRP 적립금은 만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필요 시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며 법정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개인형IRP 장점

절세 효과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모두 과세되지 않고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과세
과세이연 효과	퇴직 시 퇴직급여를 개인형IRP로 수령하게 되면, 과세가 인출시점까지 이연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이자(배당)소득세도 운용 자금으로 활용
다양한 상품 운용	개인형IRP 내에서 복수의 상품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자산 관리가 가능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특례(기업형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의 회사에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IRP를 설정할 경우, 별도의 퇴직연금 규약 작성 및 신고 절차 없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며 운용방법은 DC제도와 동일합니다.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DB, DC·기업형IRP) 비교

구분	퇴직금제도	DB제도	DC제도·기업형IRP
사용자부담금	-	법정 최소적립수준과 자산운용성과 등을 고려하 여 최소부담금 수준을 정하고, 투자원칙, 예산계획 등에 따라 사용자가 적정 수준을 납부	가입자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가입자의 추가납입 가능여부	_	불가	가능
퇴직급여	[3	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이상	사용자부담금 ± 운용손익
적립금 운용주체	-	사용자	가입자
수수료 부담주체 (사용자부담금)	-	사용자	
수수료 부담주체 (추가납입분)	-	-	가입자 (노사협의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 가능)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	사용자	사용자	퇴직연금사업자
담보대출	_	적립금의 50%까지 가능	
중간정산/중도인출 가능여부	법정사유 해당 시 중간정산 가능	불가	법정사유 해당 시 중도인출 가능
퇴직급여 수급요건	■ 개인형IRP로 이전하고, 아래 요건 충족 시 연금 수령 가능 ① 만 55세 이상 ② 연금수령기간 5년 이상 ■ 연금 수급 요건이 안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일시금 수령 가능		

퇴직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은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필요합니다.

임금에서 제외되는 금품

-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경조금, 상병위로금, 공로보상금 등)
-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보상하는 실비변상적 금품 (출장비 등)
- 복리후생적 금품 (차량유지비, 장학금, 보험보조금, 저축장려금, 현물급식 등)
- 성과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이나 성과상여금 (연말상여금 등)
- 퇴직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 평균임금은 기본적으로 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며, 퇴직급여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 항목

- 통화지급 | 기본급, 연차수당, 직책수당, 연장·야 간·휴일 근로수당, 자격수당, 상여금 등 계속적이 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급여
- 현물지급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된 현물급여

평균임금 산정 시 불포함 항목

- 경영성과 등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지급 의무 가 없는 경영성과급
- 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
- 경조금, 의료비, 실비변상적인 급여

※ 육아휴직, 출산휴가, 업무 중 상해로 인한 휴업기간, 수습기간 등 적법상 쟁의기간의 임금과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여 계산



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 절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 단, 의무이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개인형퇴직연금(IRP) 이전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지급 절차]

① 개인형IRP 가입

② 고로자 및 되직 신청 되지급여청구 되지급여청구 및 퇴직급여 입금 (개인형IRP)

⑤ 개인형IRP 운용

지급 절차	주체	비고
① 개인형IRP 가입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을 이용하여 개인형IRP 가입
② 퇴직 신청	가입자	사용자에게 퇴직 신청 - 개인형IRP 통장 사본(또는 가입 확인서) 첨부
③ 퇴직급여 청구	사용자	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급여 지급 청구 - 퇴직급여 지급 청구서, 개인형IRP 통장 사본 제출 (DB제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첨부)
④ 운용자산 매도 및 퇴직급여 입금(IRP)	퇴직연금 사업자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상품 매도 및 지급(IRP로 입금)
⑤ 개인형IRP 운용	가입자	개인형IRP 운용지시(필요시 연금 또는 일시금 신청)

개인형IRP로의 의무이전 예외 사유

-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 퇴직급여액이 법령에서 정한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과 함께 해외로 출국한 경우
- **타 법률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이 경우 잔여 금액은 개인형IRP 등으로 이전)
-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수급권의 보호

-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를 갖춘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 당사는 현재 담보대출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가능 사유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월세 등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재직중 1회 한정) 3. 본인(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4. 가입자가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 5. 본인(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6.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 한도	1~5번 사유 :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6번 사유 : 임금 감소 또는 재난으로 입은 가입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한도
가능 제도	DB, DC, IRP 모두 가능



중도인출

- DC와 IRP가입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4조의 사유에 한하여 적립금의 인출이 가능합니다.
- DB제도의 가입자는 중도인출이 불가하며,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DC제도로 전환 후 중도인 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시 과세되는 세금은 인출 사유와 자금원천에 따라 다릅니다.
- 제출 서류: 실명확인증표, 중도인출 신청서, 사유별 추가 제출 서류
- DB가입자의 중도인출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
-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에 재직 중에는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중도인출 시 적립비율이 낮아져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을 저해하게 되며,
- 적립금 운용과 연금계리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근거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도인출 사유별 추가 제출서류]

인출사유	추가 제출서류	발급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현 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주택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와 건물등기부등본 	주민센터 정부24(인터넷) 위택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전·월세 등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재 직중 1회 한정)	 현 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와 건물등기부등본 	주민센터 정부24(인터넷) 위택스
본인(배우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 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 병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DC,기업형IRP가입자의 경우 본인 연 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부 담한 경우에만 중도인출 가능	■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이미 지출된 또는 지출이 예정된 의료비의 증빙 자료	의료기관
가입자가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 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최 근 5년 이내)	■ 파산선고문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법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사실확인서	시, 군, 구청
퇴직연금 담보대출 원리금을 상환 하기 위한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 에 필요한 금액 이하 한정)	별도문의	

퇴직연금제도 중단 또는 폐지 시 처리 방법

-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중단된 기간 또는 폐지된 이후 기간에 대해 퇴직금제도 를 적용합니다.
- 중단 및 폐지는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차원에서 중대한 변화이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방법을 퇴직연금규약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사유를 규정해야합니다.

• 퇴직연금제도 중단 시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이 중단되더라도 가입자의 추가납입, 퇴직급여 지급, 적립금 운용, 적립금 운용 현황 통지 및 가입자교육 등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한 업무는 계속 수행되어야 합니다.

- * 중단 사유
- 고용노동부장관의 중단 명령
- 운용 중인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이 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업무를 이전하도 록 명령 내리기 전
- 일시적인 재정 압박으로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등

• 퇴직연금제도 폐지 시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면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해야 하며, 폐지시점까지 적립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개인형IRP로 이전)합니다. (중간정산으로 간주)

- * 폐지 사유
- 노사 합의로 폐지하는 경우
- 사업장의 소멸·도산, 다른 퇴직연금제도로의 변경 등

기업 도산 등의 경우 퇴직연금 청구

퇴직연금 가입자가 근로하는 사업장의 폐업, 부도, 도산, 사용자의 행방불명 등 사업장을 통하여 퇴직급
 여를 지급받기 곤란한 경우 가입자가 퇴직연금 가입 금융기관에 직접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사업장 폐업·도산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못하고 금융기관에 쌓여있는 퇴직연금 적립금
청구 주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으나, 퇴직 후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기업 도산 등의 경우 퇴직연금 청구절차 및 방법

퇴직연금 가입 금융기관 확인

통합연금포털에 접속하여 확인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청구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퇴직급여 청구

지방고용노동관서체불신고

미납 부담금이 있을 경우 체불신고 및 체당금 신청

퇴직연금제도 가입사실 확인

- 사업장과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퇴직 연금사업자)에 문의하여 퇴직연금 가입 여부 및 퇴직연금제도 유형 등을 확인
- 본인이 가입한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을 모르는 경우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여 확인 가능

통합 연금포털 접속 방법

- 금융감독원(https://fss.or.kr) → 통합연금포털
 접속 → 내 연금조회 → 연금계약정보
- 이용절차 │ 서비스신청 및 이용동의 등 회원가입
 →연금조회 신청(3영업일 소요) → 연금조회
- **조회정보** | 퇴직연금 가입정보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수령

수령 금액

제도유형	퇴직급여 지급액
확정급여형(DB)	30일분 평균임금 x 적립비율*
확정기여형(DC)	납입부담금±운용손익

* 적립비율 :

TA : 전체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예상액

→ 퇴직급여 수령액은 적립비율, 운용손익 등에 따라 퇴직 금 계산 방식에 의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수령 방법

- 확정된 퇴직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IRP)계정으로 지급 되며, IRP 계정이 없을 시 금융기관에서 IRP 계정을 개 설하여야 합니다.
- → 단, 개인형IRP 의무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일반 계좌로 지급 가능 (p.9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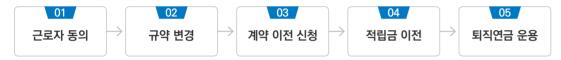
미지급 퇴직급여 청구시 필요서류 안내

기분 필요 서류 폐업·도산 사실 확인 서류 ■ 폐업 사실 확인서 (세무서, 국세청) ■ 도산 등 사실인정통지서 (지방노동관서) ■ 재판상 파산의 경우 법원 결정문 (법원) 퇴직 사실 확인 서류 ■ 퇴직확인서 ■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사회보험제도에서의 자격상실 서류 (고용보험 자격상실 서류의 상실 사유 참조 등) ■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고용보험 자격 취득 사실 확인, 재직증명서 등)

- ※ 각 구분별 1개의 서류만 제출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체당금 사실확인통지서 추가 제출)
- ※ 당사 방문 전, 연금자산관리센터 통화 후 미지급 퇴직급여 대상 여부 확인 필요
-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①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③퇴직급여 소송관련 확정 판결문 등 객관적 서류를 제출하면 보다 정확하게 퇴직급여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계약(적립금)이전

- 계약 이전이란 퇴직연금사업자(운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를 교체하는것을 의미합니다.
- 계약 이전을 하더라도 가입자의 퇴직급여는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 계약 이전 지급 절차



진행절차	상세내용
① 계약이전 검토 및 근로자 동의	계약이전을 검토하고,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 청취
② 규약 변경	규약을 변경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수리
③ 계약 이전 신청	이전을 원하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 체결 새로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계약 이전 신청
④ 가입자 정보 및 적립금 이전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으로 가입자 정보 이전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으로 적립금 이전
⑤ 퇴직연금 운용	새로운 퇴직연금사업자에서 퇴직연금제도 운영

계약이전처리 지연보상금

- 계약이전 신청 시 신청일을 포함하여 5영업일 이내에 이전 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며, 지연 시 지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처리기잌
- 운용관리기관 | 최대 3영업일 / 자산관리기관 | 최대 3영업일
-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일은 자산관리기관의 접수일과 같으므로, 최대 5영업일 소요
- 적립금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일에 포함하지 않음
- 지연 보상금 계산 방식
- 지연보상 대상 금액에 대해 초과일수만큼 일할 계산
- 지연이자율 | 연10%(초과일수 14일 이하), 연 20%(초과일수 14일 초과)
- 실적배당형 상품 등에서 지급지연으로 인한 펀드가격 하락 시 그 손실도 보상

연금 백사

퇴직연금 300조 시대, 투자의 문이 열린다

한세연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2년도 말 약 336조원으로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퇴직연금 적립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었지만 퇴직연금 적립금 수익률은 최근 10년간 연 2.39%대에 불과합니다. 반면 퇴직연금 투자 문화가 정착 된 미국 퇴직연금 수익률은 최근 10년간 연 8%를 웃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퇴직연금을 손실이 나지 않아야 할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어 주로 원리금 보장형 상품(86.4%)에 투자해 수익률 개선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올해 초 금융위원회에서 퇴직연금이 안정적인 노후수단이 되도록 적립금 운용규제를 좀 더 완화하였습니다. 2023년 퇴직연금 투자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1.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본격 시행

올해 7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DC 형(확정기여형)과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서 만기자금과 신규 부담금이 일정 기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해둔 상품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DC/IRP 가입자라면 가입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디폴트옵션 상품 중 한가지를 미리 선정해야 합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주로 정기예금, 글로벌자산 배분펀드, TDF 등을 포트폴리오 형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2분기말 기준 디폴트옵션 상품 현황 및 운용실적 공시에 따르면 약 200만명이 디폴트옵션을 선정했고, 약 1조 1,019억원의 퇴직연금이 적립되었습니다. 현재 디폴트옵션 운용상품의 6개월 평균 수익률은 약 5.8%로 순조로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2. 연금 상품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한 T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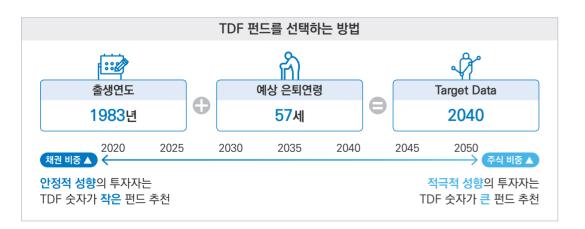
TDF(타겟데이트펀드)시장은 디폴트옵션 상품의 주 편입상품으로 선정과 퇴직연금 장기투자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니즈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프앤가이드에 등록된 TDF는 169개이고, 순자산은 11조 1,379억(2023년 5월 말 기준)으로 시장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TDF는 국내외 채권, 주식, 대체자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 하면서 은퇴주기에 따라 주식과 채권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하며 운용합니다.

예를 들어 'TDF2040'펀드의 은퇴시점(Target Date)은 2040년으로 이에 가까워질수록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 가면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합니다. TDF는 대체적으로 글로벌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운용 전략에 따라 환율변동 상품이 있으니 투자하기 전에 잘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상반기 주요 순유입 TDF 펀드

- KB다이나믹TDF203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운용)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한국투자TDF알아서ETF포커스2030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모)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키움키워드림TDF2030증권투자신탁 1[호합-재간접형]

^{*} 출처: 펀드가이드(기준일: 2023.06.28)



3. ETF(상장지수펀드) 100조 시대

2002년 국내에 첫 도입된 ETF(상장지수펀드)가 20여년 만에 100조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미국의 ETF시장은 개인의 퇴직연금 투자와 함께 성장해온 것으로 알려져 국내 ETF시장 역시 연금시장과 동반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TF는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직접투자 할 수 있는 주식의 장점과 간접 투자하는 펀드의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ETF투자는 배당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고 동시에 주가 상승으로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 연금 자산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어 적극적인 연금 자산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주식, 채권, 지수 등 기초자산이 다양해 ETF 만으로도 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어 퇴직연금계좌에도 ETF 투자자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 ETF를 읽는 방법 (예시)

운용사 이름	투자대상	운용전략
■ KODEX 삼성자산운용 ■ TIGER 미래에셋자산운용	■ 단기통안채 ■ 국고채 10년	■ TR 배당을 재투자 ■ H 환 헷지 ■ 합성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 KBSTAR KB자산운용 ■ KINDEX 한국투자신탁운용 ■ KOSEF 키움자산운용	■ 고배당 ■ 코스피대형주 ■ S&P 500	않고 스왑 형태 • 액티브 기초 지수를 따라 가는 패시브와 달리 일정 비중을 펀드매니저 역량

4. 퇴직연금 계좌에서 국채투자 활발

퇴직연금계좌에서 원리금 보장형을 선호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채권매매는 DC와 IRP계좌에서 국채를 100% 매수할 수 있고, IRP계좌에서는 일정 등급이상의 회사채권을 종목당 30%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별 채권 상품 운용 기준 상이) 특히 퇴직연금계좌에서는 운용기간 중 이자·배당 소득세 등 세금이 발생되지 않아 금융소득이 많아 고민인 개인 투자자들의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채권 수익은 발행금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자수익'과 채권의 매수 시 가격과 만기 시 받는 금액의 차이로부터 얻는 '매매차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금리인상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자수익과 금리 하락 시 매매차익을 모두 노릴 수 있는 국고채권 장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기존의 정기 예금을 중심으로 한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서 벗어나 장기 국고채권 매매 등 퇴직연금 계좌 수익률을 조금 더 올리려는 투자의움직임이 노후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Ⅱ·확정급여형(DB) 추가 교육사항

재정검증에 관한 사항

■ 재정검증이란

DB제도 퇴직연금 도입 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간사기관)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 평가액이 법정 최소적립수준(최소적립금) 이상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 최소적립금

기준책임준비금의 법정 최소적립수준에 해당하는 금액

* 법정최소적립수준

대상연도	2012~2013년	2014~2015년	2016~2018년	2019~2020년	2022년~
최소적립비율	60%	70%	80%	90%	100%

※ 과거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가입한 경우, 과거근로기간과 가입연차에 따라 별도 산출

* 기준책임준비금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계속기준책임준비금과 비계속기준책임준비금 중 큰 금액)

* 계속기준책임준비금

회사가 청산되지 않고 계속된다는 가정하에 장래 지급될 퇴직급여 및 그 지급 시점을 기초율(예상임금상승률, 예상퇴직률, 예상사망률 등)을 고려하여 예측하고 그 금액을 현재가치로 계산한 금액(연금계리 방식)

* 비계속기준책임준비금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모든 가입자가 퇴직한다는 가정하에 지급되어야 할 금액

■ 재정검증 결과 부족 시 (적립금 평가액이 최소적립급의 95%에 미달하는 경우)

- ① 퇴직연금사업자가 전체근로자(과반수 이상 가입 노조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에 통보
- ② 사용자는 3년 이내에 적립금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체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퇴직연금사업자에 통보
 - * 재정검증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미작성·미통보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500만원)
- ③ 사용자는 재정검증 결과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해야하는 의무가 발생
 - * 적립 부족비율의 1/3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최대 1,000만원 (1회 위반 : 200만원, 2회 위반 : 500만원, 3회 이상 위반 : 1천만원)
 - * 부족비율 = 최소적립비율 적립비율(재정검증 결과)

※ (예시) 전년도 사업연도 말 기준 재정검증 결과가 최소적립비율 100%, 적립비율 85%인 경우

- → 부족비율 15%이므로, 부족비율의 1/3인 5% 이상을 해소해야 함
- → 당년도 사업연도 말 재정검증 결과 적립비율이 90%(85% + 5%) 이상이어야 함

■ 재정검증 결과 기준책임준비금 초과 시

-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50%를 초과한 경우 | 사용자 요청시 반환 가능
-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150% 미만 초과한 경우 l 향후 납입할 부담금 상계

적립금 운용 목표 및 수립

DB제도 적립금 운용의 최종 목표는 근로자 수급권 보호에 있고, 이를 위해 적립금 운용의 주체인 사용자는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용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최소	방만한 운용으로 근로자의 수급권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수급권 보장에 충실한 운용 목표를 수
적립수준 유지	립해야하고, 법정 최소적립수준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자산·부채	임금상승 등 퇴직급여채무를 변화시키는 여러 요인들을 예측하고 분석하여 부채의 변동을 고려한
관리	자산관리를 실행해야 합니다.
목표	회사가 요구하는 수준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 투자
수익률 관리	원칙에 따라 운용해야 합니다.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적립금운용계획서(IPS) 작성 의무

- 대상법인 |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용자에 한함
-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5~7명으로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회의 및 IPS 작성 필요
 - 위원장 | 퇴직연금제도 운용 업무 담당 임원
 - 위원 | 위원장이 위촉하여 선출
 - ※ 재정검증 결과 적립부족인 경우에는 아래의 ①~③의 인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함.
 - ① 과반수 가입노조에서(없으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하에) 선출된 사람 ②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부서장
 - ③ 관련 경험·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1회 위반 | 100만원, 2회 위반 |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 500만원)
- 적립금운용계획서(IPS) 작성
 -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 수익률, 운용성과 평가 등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작성해야 함.

우리회사 퇴직연금 운용정보

- 최근 3년간 부담금 납입 현황
- 적립금 운용 현황
- 입금액, 지급액, 제비용(수수료), 운용수익, 상품유형별 적립금 평가 금액 등
- 표준급여액 수준
- 전체 가입자의 평균 근속기간, 평균 임금으로 계산된 퇴직급여액 수준
-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재정검증 결과)

*세부 내역은 별첨된 추가교육사항을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Ⅲ·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추가 교육사항

사용자부담금 납입

부담금 납입수준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가입자 추가 납입 가능) 부담금 납입시기 연간 1회이상이며, 노사합의에 의해 결정

사용자부담금 납입 지연 시

 DC 및 기업형IRP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퇴직연금 규약 및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성실히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일 만큼 법이 정하는 지연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연이자 10% 지연이자 20% 이 기연이자 20% 이 기

- * 납입유예기일: 연장된 납입기일로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 지급유예기일 : 연장된 지급기일로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입니다.

※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

-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지급 사유(파산선고, 회생, 도산 등)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지방자치법」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자금 확보가 어려 유 경우
-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자의 추가 납입

- 사용자부담금과 별도로 은퇴자산 마련을 위해 가입자 본인의 부담으로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 추가 납입한 금액은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을 한도로 최대 16.5%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DC제도 | 표준형DC제도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야 하나,
-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DC제도(이하 '표준형DC제도')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작성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표준규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 이해관계가 비슷한 사용자들이 연합하여 별도 규약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나의 퇴직연금 납입 정보

- 사용자부담금 납입 주기
- 최근 1년간 사용자부담금 납입 현황
- * 세부내역은 별첨된 추가교육사항을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IV · 디폴트옵션 알아보기

디폴트옵션이란?

- DC/IRP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지시를 일정기간동안 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의무사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으로 2022년 7월 12일 최초도입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12일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디폴트옵션 개요

DC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기업형/ 누구나 가능 가입자 개인형 IRP 법인의 근로자 적용 대상 ※ DC법인 도입은 의무도입(법적의무사항) ※ Opt-in (직접매수)은 법인 도입여부 관계없이 가능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신규 입금 디폴트옵션 선정 후 만기상환 만기가 있는 예금. 부담금 입금분 자금 채권 .ELB 등 적용 대상 ※ 단, 아래의 부담금/만기상환자금 등은 디폴트옵션 적용 제외 금액 ① 입금예정분 매수비율이 지정된 계좌의 신규입금 부담금 ② 만기예약 운용지시가 지정된 계좌의 만기상환자금 ③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지시한 상품매도자금

디폴트옵션 선정 이후 적용 대상 및 프로세스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포인트 6가지

DC·IRP 가입자는 디폴트옵션을 꼭 선정하세요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DC, IRP 가입자에만 적용됩니다. DC, IRP 가입자는 미리 디폴트옵션을 선정하여 운용지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 등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DC 가입자는 재직중인 회사가 퇴직연금 규약에 디폴트옵션 상품을 반영한 후에 선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위험성향을 고려하여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정하세요

투자위험, 목표를 고려하여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정하세요. 디폴트옵션의 운용대상 상품은 투자위험에 따라 4가지 위험 그룹(초저·저·중·고위험)으로 나뉘며 그룹별로 구성상품이 다르므로 본인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 여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 디폴트옵션의 상품구성 (예시)

디폴트옵션 운용상품은 정기예금, 펀드, TDF 등의 상품을 포트폴리오 형태로 구성하며 투자위험성에 따라 구성상품의 비중이 상이합니다. 즉,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 원금보장 & 예금선호

정기예금을 통해 안정적인 운용



초저위험 포트폴리오

↑ 초보 투자자

펀드와 예금 비중 50:50



저위험 포트폴리오

○ 중급 투자자



중위험 포트폴리오

은퇴 시점에 따른 100% 적극적인 글로벌 투자

고위험 포트폴리오

디폴트옵션을 선정하더라도 당장 운용상품이 변경되지 않아요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적용될 상품을 스스로 사전에 선정"해 놓고 실제 운용지 시를 하지 않은 경우(최대 6주 대기)에 한해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기존 보유상품은 디폴트옵션 선정과 무관 하게 만기까지 운용됩니다. 디폴트옵션은 만기가 있는 금융상품에만 적용됩니다.

디폴트옵션을 대기기간 없이 바로 운용할 수 있어요

가입자가 직접 디폴트옵션으로 운용지시 하는 경우(옵트인)에는 최대 6주간의 대기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 다. 재직회사가 퇴직연금 규약에 디폴트옵션을 반영하지 않아 디폴트옵션 선정이 불가한 DC가입자도 직접 운용지시(옵트인)로 디폴트옵션 매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자는 언제든지 디폴트옵션을 다른 상품으로 변 경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디폴트옵션 직접매수(Opt-in)/매도(Opt-out)

옵트-인 (Opt-in)

- 디폴트옵션 상품을 대기기간 없이 바로 매수하는 거래
- 가입자는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직접 매수
- 현금성 잔고 전체 매수 가능

옵트-아웃 (Opt-out)

■ 가입자가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하던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매도하는 거래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자동재예치는 불가하므로 유의하세요

2023.7.12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더 이상 동일 상품으로 자동재예치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 운용지시를 하거나 디폴트옵션을 선정하세요. 가입자가 만기가 도래하는 원리금 보장상품에 대 해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디폴트옵션 선정을 하지 않은 경우 만기도래자금은 대기성자금으로 운용되어 운 용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 공시수익률을 비교하여 좋은 상품을 고르세요

금융회사별 디폴트옵션 상품의 운용실적이 공시되고 있으므로 이를 비교하여 더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 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디폴트옵션 상품의 운용실적을 공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 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www.moel.go.kr-정책자료실) / 금융감독원(www.fss.or.kr-통합연금포털)

⊸ V · 퇴직연금 과세체계 이해하기

퇴직소득세 이해하기

■ 퇴직소득은 장기간 형성된 소득이므로,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연평균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후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퇴직급여(퇴직소득)	\rightarrow	근속연수	근속연수 공제
		5년 이하	100만원 x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 10년 이하	500 만원 + 200만원 x (근속연수 - 5년)
		~ 20년 이하	1,500만원 + 250만원 x (근속연수 - 10년)
× 환산배수(12배)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x (근속연수 - 20년)
근속연수			
	\rightarrow	환산급여	차등 공제
환산급여		800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2000		~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 환산급여 공제		~ 1억원 이하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된 된 전 대 어 등 제	_	~ 3억원 이하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 퇴직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1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3억원 초과	1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1 = 110	\rightarrow	3억원 초과 과세표준	1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소득세율
× 소득세율	\rightarrow		, , , , , , , , , , , , , , , , , , , ,
	\	과세표준	소득세율
× 소득세율 =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소득세율 과세표준 × 6%
× 소득세율 •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소득세율 과세표준 × 6% 과세표준 × 15% - 126만원
× 소득세율 • 환산산출세액	\rightarrow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8,800만원 이하	소득세율 과세표준 × 6% 과세표준 × 15% - 126만원 과세표준 × 24% - 576만원
× 소득세율 환산산출세액 환산배수(12배)	\rightarrow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8,800만원 이하 ~ 1.5억원 이하	소득세율 과세표준 × 6% 과세표준 × 15% - 126만원 과세표준 × 24% - 576만원 과세표준 × 35% - 1,544만원
※ 소득세율 = 환산산출세액 • 환산배수(12배)	\rightarrow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8,800만원 이하 ~ 1.5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소득세율 과세표준 × 6% 과세표준 × 15% - 126만원 과세표준 × 24% - 576만원 과세표준 × 35% - 1,544만원 과세표준 × 38% - 1,994만원

퇴직연금 과세방식

■ 퇴직연금은 부담금의 납입과 운용 시 과세를 이연하고, 급여 수령 시 소득의 원천과 수령형태(연금/일 시금)에 따라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인출방식별 과세체계

	소득원천	인출	인출방식별 과세 방법				
	소득면신	순서	연금 수령 ^{주1)}	연금 외 수령			
0	연퇴직소득	2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율의 70%(60%) ^{주2)} 분리과세)	퇴직소득세 (분류과세) *단, 부득이한 사유 해당 시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율의 70%(60%) 분리과세)			
추가	세액 공제 X	1	과세 제외	과세 제외			
납입	세액 공제 O)	세액 공제 O	■ 연간 연금 수령액 1,200만원 이하 연금소득세 (5.5~3.3%) ^{≈3)}	751.5.11.60.50(17.17111)
÷	운용 수익		■ 연간 연금 수령액 1,200만원 초과 (2024년부터 1,500만원 초과로 개정 예정) 전액 종합소득세 또는 분리과세 (16.5%) 선택가능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 단, 부득이한 사유 ^{주4)} 해당 시 연금소득세(5.5~3.3%) 과세			

주1) 연금 수령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만 55세 이상
- 가입 후 5년 경과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연금 수령 개시 신청
- 연금수령한도* 내 수령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 120%)

※ 연금 수령 외의 인출은 모두 '연금 외 수령'에 해당

주2) 연금실제수령연차가 10년 초과 시 60%

주3) 연금소득세율 | 만 70세 미만 : 5.5% / 만 70세 ~ 79세 : 4.4% / 만 80세 이상 : 3.3%

주4)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 사회적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 수령 시와는 달리 1,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 합산 과세를 하지 않고 5.5~3.3%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고 과세 종료 (이연퇴직소득의 부득이한 사유는 무조건 분리과세)
- * 상기 모든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을 활용한 절세 TIP 🚹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기 (추가 납입)

■ 퇴직연금(DC/IRP)에 개인의 부담으로 추가 납입함으로써 노후자금을 적립하고, 최대 198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기본한도 (연금저축 단독)	ISA 만기 전환 추가한도	최대 공제한도	세액공제율	연말정산 환급액
5,500만 이하 (4,500만원 이하)	900만원	전환금액의 10%	최대	16.5%	최대 198만원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600만원)	(300만원 한도)	1,200만원	13.2%	최대 158.4만원

- * 지방소득세 포함
- 900만원을 모두 퇴직연금(DC/IRP)에 납입할 수도 있고,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DC/IRP)에 나누어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 ISA 만기금액에서 연금계좌으로 전환하는 금액의 10%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3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예 시 _ 총급여액이 5,000만원이면서 ISA에 3,000만원 전환한 경우 최대 세액공제액은 198만원입니다.
 - 최대 세액공제액 = 1.200만원 x 16.5% = 198만원
 - 납입 방법
 - ① 퇴직연금(DC/IRP)에 900만원 전액 납입 또는
 - ②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 이내로 납입하고. 나머지는 퇴직연금(DC/IRP)에 납입
 - ③ ISA 만기전환 금액 | 3,000만원 (전환금액의 10% 세액공제 가능)
-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납입액은 다음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금융기관에 적립금 전환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에 시 2023년에 1,000만원을 납입한 경우, 2023년에는 9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2024년에 100만원을 납입금액 전환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추후 인출 방식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다릅니다.

60세 이상 1주택자가 주택 양도시 연금계좌 추가납입 허용

-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을 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 부부 중 1명 60세 이상 & 부부 합산 1주택자
- 대상주택 | 종전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가에서 취득가액 차감한 금액 1억원 한도)
-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을 활용한 절세 TIP 2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하기 (IRP 중도인출 또는 중도해지 시)

- 개인형IRP에 추가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도인출 또는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나 답입액 +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 부득이한 사유 | p.25 주)4 내용 참고
- *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인출액이 모두 연금으로 수령할 때와 동일하게 연금소득 세로 과세됩니다
-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인출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하지 않고 5.5~3.3%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고 과세가 종료됩니다.
- DC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운용수익을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DC에서 퇴직급여가 중도인출 되는 경우는 제외)

퇴직소득세 30% / 40% 감면 받기 (연금 수령)

- 퇴직급여를 개인형IRP에 입금하면 퇴직소득세에 대한 과세가 인출(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 시점으로 이연됩니다.
- 이때 개인형IRP에 입금한 세전 퇴직급여는 '이연퇴직소득', 개인형IRP에 입금하여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이연퇴직소득세'라고 합니다.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연금실제수령연차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를 30% 또는 4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10년 초과	
감면율	30%	40%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 연금수령액 x 이연퇴직소득세율 x 70%(60%)

•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 시 예상 금액 (예시)

퇴직급여	근속기간	일시금수령액(세후)	평균 연금수령액(세후)	누적 연금수령액(세후)
5천만원	13년 가정	4,950만원	300만원	6,005만원
1억원	20년 가정	9,877만원	609만원	1억 1,995만원

^{*} 적용 가정 | 2023년 퇴직, 만 55세 연금 개시, 예상수익률 2%, 20년간 연 1회 수령

^{*} 이연퇴직소득세율 = 이연퇴직소득세 : 이연퇴직소득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을 활용한 절세 TIP 🕄

연금수령하면서 더 절세하기

- 연금은 10년(또는 5년) 이상 분할 수령합니다.
- 10년(또는 5년) 이상의 기간동안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연금소득으로 인정되어 퇴직소득세가 감면되거나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 분할 수령 기간은 퇴직연금 가입 시기에 따라 정해집니다.
- 2013.02.28 이전 가입 | 5년
- 2013.03.01 이후 가입 | 10년
- 연금수령 시기를 늦출수록 낮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 70세 미만 | 5.5% / 만 70세 ~ 만 79세 | 4.4% / 만 80세 이상 | 3.3%
- 연간 총 연금수령액은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시기 또는 수령 기간을 조정합니다. (2024년부터 연간1,500만원으로 세법개정 예정)
- 추가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서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하여 무조건 종합과세가 아닌 종합소득 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재원으로 한 연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분리과세)
- 연간 수령액 1.2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연금의 종류

	연금 종류	한도 적용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
퇴직연금(IRP)	이연퇴직소득	×
	본인 추가 납입액(세액공제분만 해당), 운용수익	О
7401047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세액공제분만 해당), 운용수익	0
개인연금	(구)개인연금, 연금보험	×

2024년 세법 개정안 알아보기 |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 *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을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 * 2023년 7월 27일 발표된 세제개편안(기획재정부 발표)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현행	개정안
적용대상	연금저축, 퇴직연금	좌동
세율	연령별 5.5~3.3%	좌동
기준금액	연간 1,200만원 이하	연간 1,500만원 이하

연금 백세

퇴직연금 운용, 직장 새내기부터 은퇴자까지

한세연 NH투자증권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

평범한 직장인이 정년을 채워 근무했다면 대략 30년간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예정이라면 대략 10년이상 퇴직연금을 보유하게 됩니다. 즉퇴직연금은 대략 30년의 적립기간과 최소 10년이상의 수령으로 총 40년 이상 보유하는 초장기 금융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인이라면 근로기간뿐만 아니라 은퇴 이후에도 퇴직연금에 관심을 가지고 잘 운용해야 노후 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DB형에 가입되어 있어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지 않는 가입자도 은퇴 후 퇴직연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받게 되면 갑자기 목돈을 운용해야 하는 막막함이 발생할 수 있어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초장기 금융자산인 퇴직연금을 꾸준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투자원칙 첫째, 더 일찍 더 길게 투자하라

우리나라 DC제도와 유사한 미국의 401(K)가입자들은 퇴직연금자산을 안정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가능한 빨리 투자를 시작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평균 투자기간은 약 28년이라고 합니다. 퇴직연금계좌에서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일정 비중에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위험자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의 등락에 따라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장기간 투자기간을 늘리면 변동성이 줄어들어 투자위험성이 줄어듭니다.



최근 10년간 미국주식 시장의 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단기에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세계 경제도 꾸준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장기투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상향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에 분산투자하고 적정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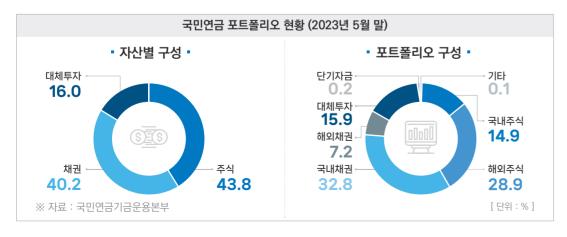
퇴직연금 투자원칙 둘째, 시간과 종목에 분산 투자하라

온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은 국내외 주식, 채권, 대체자산 등에 분산투자하고, 1988 년부터 작년 말까지 연평균 수익률은 5%가 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자산과 여러 지역에 나누어 투자하면 시장이 하락하거나 경기가 급변할 때 생기는 개별 자산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분산투자의 방법은 첫째,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방향성이 다른 자산에 분산합니다. 만약 경기가 좋지 못해 주식자산이 급락하더라도 방향성이 다른 채권자산을 통해 수익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산에 고르게 투자합니다. 최근 국가별로 환율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별 자산의 매력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상품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TDF펀드의 운용은 대체적으로 글로벌 자산 분산투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 투자의 시기를 분산합니다. 매수 시점을 나누면 가격이 하락할 때 더 많이 살 수 있어 투자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확보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부담금이 들어오는 주기에 맞춰 자연 스럽게 투자 시기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투자원칙 셋째, 저축 단계와 연금수령 단계와 자산운용 방식을 다르게 하자

퇴직연금은 크게 저축단계와 은퇴 후 연금 수령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은퇴기간이 많이 남아있을 때는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의 투자 비중을 늘리고 은퇴가 다가올수록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 연금 인출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에는 비상자금을 대비해 최소 3년 치 인출금액은 단기에 매도해도 손실이 나지 않는 원리금 보장성 상품으로 운용하도록 합니다. 이때 정기예금과 같이 만기가 정해진 상품은 중도 매도 시 약관에 명시된 해지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퇴직연금 투자원칙 넷째, 최소 1년에 1번은 점검하자

장기투자의 의미가 사 놓고 평생 묻어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초기에 목표했던 포트폴리오의 자산 비중이 변하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지나 변경된 포트폴리오 편입비중을 사전에 설정했던 비중으로 유지시켜 전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리밸런싱(Rebalancing)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형과 채권형에 각각 50%씩 매수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주식시장이 좋아져서 주식형 상품이 크게 오르면 상승분을 매도해 채권형 상품에 안전하게 넣어둡니다. 반면 주식시장이 조정을 맞아 급락하는 구간에서는 안정적으로 운용된 채권형 상품을 매도해 많이 떨어진 주식형 상품을 추가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 하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은 줄어들고 총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계좌에서 최소 1년에 한번은 리밸런싱을 점검하도록 합니다.



⊸ VI · 적립금 운용 이해하기

운용가능 상품의 종류 및 특징

-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용상품은 원금과 이자가 확정된 '원리금보장형상품'과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형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원리금보장형상품의 경우 그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높을 경우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 실적배당형상품은 원리금보장형상품보다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구분	원리금보장형상품	실적배당형상품
대상상품	정기예금, ELB, RP, 발행어음, GIC(퇴직연금 이율보증형 보험) 등	채권, 펀드, ETF 등
상품운용관련보수/수수료 (운용/자산관리수수료 별도)	없음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보수, 선취/후취수수료, 환매수수료 등
매도관련	만기 전 매도 시 패널티 발생	환매 시 적용 기준가 매도주문일로부터 n영업일의 기준가 (상품별약관 및 투자설명서 참고)

^{*} 각 상품에 대한 상세 내용은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투자유형에 따른 자산구성 (예시)

- 어떤 운용방법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운용 결과가 달라지고, 나의 은퇴자산이 달라집니다.
- → 운용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안전한 운용방법에만 투자하면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고, 수익성이 높은 운용방법에만 투자하면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 노후 설계, 현재 재무상황 및 투자성향 등을 고려한 현명한 자산배분이 필요합니다.

[투자성향에 따른 자산 배분 예시]

구분	자산배분비율(예시)	투자성향
안정형	원리금보장형100%	투자원금의 손실을 원하지 않고 수익이 적더라도 확정적인 수익률을 보장받고자 하는 가입자
안정추구형	원리금보장형70% 실적배당형30%	일정 수준의 투자수익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안정성을 추구하는 가입자
위험중립형	원리금보장형50% 실적배당형50%	기대수익에 상응하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시중금리 이상의 기대수익을 요구하는 가입자
적극투자형	원리금보장형30% 실적배당형70%	이천은 7배워다리도 토판이그의 단권나다는 내중그리고 그 이 사이의 사회원그가 된는 것이다.
공격투자형	실적배당형100%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시중금리 + $lpha$ 의 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가입자

퇴직연금 투자 가능 상품 및 투자한도

- 퇴직연금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은 크게 비위험자산(원리금 보장상품)과 위험자산(원리금 비보장상품) 으로 구분되며, 위험자산은 총 적립금의 70% 한도 내 투자가 가능합니다.
- 위험자산 비중이 70%를 초과할 경우 투자한도 초과사실이 문자 메시지 등으로 고지되며, 위험자산 비중을 70% 아래로 줄이기 전까지는 위험자산을 추가로 매입할 수 없습니다.
- TDF는 은퇴 시점을 타겟 데이트로 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위험자산 비중을 줄여 나가는 상품으로 100% 투자가 가능합니다.

		총 적립금의 100%
비위험자산 (원리금 보장)	정기예금, ELB, RP, 채권 (국고채,통안채,물가채 등) 채권형펀드·ETF (BBB-미만 채권 30% 이내) 70%	
위험자산 (원리금 비보장)	주식형펀드·ETF, 회사채, 채권형펀드·ETF (BBB-미만 채권 30% 초과) 상장리츠·인프라, 대체자산투자펀드·ETF, 자산배분형 펀드	100%
TDF (비위험+위험)	적격 Target Date Fund (설정시 주식 비중 80% 이내, 목표 연도에 주식비중 40% 이내 등 조건 충족하는	: TDF)

[위험자산 투자 가능 상품 및 투자한도]

78	투자가능상품	투자한도	
구분	구사기증경품	DB	DC/IRP
지분증권	상장주식		투자불가
시판증단	상장리츠 (동일법인 발행증권 30% 한도)		
채무증권	지방채, 회사채 (투자적격등급) (동일법인 발행 30% 한도)		
집합투자증권	주식형 / 주식혼합형 (주식편입비중 40% 초과 펀드)	70%	70%
파생결합증권	최대손실한도 40% 미만의 ELS/DLS		
사모펀드			투자불가
적격 TDF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TDF	70%	100%

▽ VII·자산, 부채 관리 일반원칙과 노후설계의 중요성

노후 설계의 중요성

급속한 고령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은 2000년 7.2%로 시작하여 2010년 10.8%, 2022년 17.5%로 급격히 늘어 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인구비율의 증가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부족	생산인력 감소 등에 따라 기본 노후 보장 여력인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집중 소비	은퇴 후에도 은퇴 전과 동일한 수준의 소비를 하거나, 자녀 결혼 등 소비를 집중시키는 원인 들로 인해 노후 생활이 불안합니다.

노후 설계 시 고려사항

- 한 개인의 라이프사이클은 크게 청년기, 신혼기, 중·장년기, 노년기의 4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로 맞춤형 투자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 특히 결혼, 자녀교육, 내집마련 등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이벤트성 재무문제는 라이프사이클에 맞춘 자산·부채 관리를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구분	청년기	신혼기	중·장년기	노년기
이슈	결혼자금	출산/자녀교육	부채상환/은퇴계획	노후생활
투자목적	자산축적	자산축적	자산관리	소비
자산관리	대출설계	보험설계	은퇴설계	상속설계
투자성향	적극투자시기	위험중립시기	위험중립시기	안정추구시기
위험자산투자비중(예시)	70%	60%	50%	30%

퇴직연금, 소득공백기의 중요한 가교자금

■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연령(1969년생 이후 기준)인 만 65세까지의 기간을 소득공백기라고 합니다. 이 소득공백기에 활용하기 좋은 자금이 퇴직연금입니다. 오랜 직장생활동안 적립된 퇴직연금은 소득이 없는 시기에 가교 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1961년 ~ 64년생 63세, 1965년 ~ 68년생 64세, 1968년생 이후 65세 ※ 자료: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노후생활비 체크하기

먼저, 주요 지출항목을 바탕으로 노후생활비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퇴 전까지 준비할 수 있는 노후자금으로 노후생활비가 충분할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노후준비자금이 충분하다면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노후생활비를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충분하지 않다면 추가로 준비할 수 있는 노후자금은 없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노후생활비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은퇴 후 일자리를 통해 노후소득을 늘리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계획적으로 준비한다면 누구나 슬기로운 은퇴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후생활비 체크포인트				
1	노후생활비는 은퇴 전 생활비의 70% 수준이 적정			
2	2 은퇴 후 지출 부담이 높아지는 항목 및 지출이 늘어나는 항목에 대한 계획적인 준비 필요			
3	주거관련비용	은퇴 후에도 꾸준히 발생하는 비용. 주택담보대출 상환계획 및 주거이전 검토 필요		
4	의료비	은퇴 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담이 높아지는 비용. 의료보험 재정비 및 건강관리 필요		
5	여가활동비	은퇴 초기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삶의 만족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 필요		
6	비소비지출	세금, 건강보험료, 이자 비용, 경조사비 등. 주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계획적인 준비 필요		
7	기타	자녀 학자금, 결혼자금 등 은퇴후 자녀지원 계획이 있다면 생활비 외 별도 여유자금 필요		

※ 자료: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주요 노후 재무 설계 지원 사이트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https://fss.or.kr)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http://csa.nps.or.kr)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
- NH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s://www.nhqv.com 접속 → 연금자산 → 100세시대연구소 → 노후준비진단하기)

⊸ VIIIㆍ퇴직연금 온라인 이용하기

모바일앱 이용하기

당신에게 꼭 맞는 새로운 자산관리!! 지금 바로 스마트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앱 설치하기** (가입계좌에 따라 사용하는 앱이 달라집니다)





• 온라인 교육 이수하기



- ※ 로그인이 안되거나 DC·기업형IRP 계좌가 안보이는 경우
 - ① 회사에서 가입자명부를 등록한 후 가입자 본인이 별도 신규가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DC만 해당)





홈페이지 이용하기

NH투자증권 연금자산 홈페이지에서는 고객님의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통합하여 한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특징

-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메뉴를 모아 잔고 조회, 상품 정보 확인, 매매까지 빠르게 이용 가능
- 연령별로 수령할 수 있는 예상 연금수령액 조회 가능
- 자산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연금자산 추이 그래프 제공
- 베스트컬렉션, 수익률 Best 등 퇴직연금 인기 펀드 상품 검색 가능
- 퇴직연금 제도별, 유형별, 지역별, 테마별 펀드 상품 검색 가능
- 100세시대 준비지수로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 홈페이지 접속하기 www.nhqv.com → (상단메뉴 중) 연금자산 선택
- 온라인 교육 이수하기 홈페이지 로그인 \rightarrow 연금자산 \rightarrow 퇴직연금 \rightarrow 퇴직연금가입자교육 \rightarrow 온라인교육수강



- 퇴직연금 상품 안내 및 제도 관련 상담
- 퇴직연금 적립금 및 입출금 내역 안내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의

다양한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100세시대연구소 홈페이지 | www.nhqv.com/the100





100세시대연구소 발간서적



- 중앙일보에스 (2022.6.15)
- 은퇴 후 삶을 제시하는 인생2막 지침서



- 굿인포메이션 (2020.11.10)
- 행복한 노후를 위한 생애 자산설계 지침서



- 매경출판 (2019.12.20)
- 2,000만 직장인들을 위한 은퇴설계 지침서



- 굿인포메이션 (2018.04.10)
- 연령별·직업별 맞춤식
 생애 자산설계 매뉴얼

퇴직연금 유의사항

- ※ [공통]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공통]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 [공통] 과세 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공통]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 [DB]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DC]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자산관리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 [IRP-QV] 적립금 평잔*에 따라 운용관리수수료(0.08%~0.15%)와 자산관리수수료(0.07%~0.10%)가 발생하며 연 후취, 적 립금 평잔 구간별 상이, 자세한 수수료율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립금 평잔*: 연간 일자별 평가금액의 평균 값. 퇴직금 이전분에 한함)
- ※ [IRP-나무]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자산관리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채권] 발행사/발행국의 신용위험(부도 또는 파산 등)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적격 신용등급은 AAA/AA.A.BBB 각 +,0,-순으로 구분)
- ※ [ELB] 발행사의 신용위험(부도 또는 파산 등)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LB수익률은 상환조건(조기 또는 만기) 등 충족시 지급될 수 있는 최대 수익률에 불과하며, 발행회사가 상환조건이나 수익률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하므로 상환조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ELB투자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ETF 매매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보수(ETF별 상이, 상세 내용은 각 운용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는 추가발생 합니다.
- ※ 리츠매매 시 매매수수료는 무료이며 ,매매수수료 외 제세금(KOSPI기준 증권거래세 0.08%, 농어촌특별세 0.15% 매도 시 체결 금액기준 징수), 보수비용(리츠 별 상이)이 발생하며 보수비용에 대한 상세내용은 각 운용사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부동산 관련 상품의 경우 부동산 경기 변화에 따라 수익이 변동할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가격하락 시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